

# 변경 대비 표

■ 펀드명 : 하나 글로벌인프라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5년 3월 28일

■ 주요 변경사항

-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 통화관련 파생상품 추가
- 목표환헤지 비율(90% 수준 → 60% 이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 "인프라스트럭처자산" 정의 추가

■ 신탁계약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 대상자산 등)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통화관련 파생상품 추가	①집합투자업자는-<생략>-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2. <생략> 3. <추가>	①집합투자업자는-<이하 동일>-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2. <이하 동일> <b>3.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 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에 한한다.(이하 "통화관련 파생상품"이라 한다.)</b>
제 18 조(투자 대상자산 취득한도)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통화관련 파생상품 추가	집합투자업자는-<생략>- 바에 따라 따른다. 1~2. <생략> 3. <추가>	집합투자업자는-<이하 동일>- 바에 따라 따른다. 1~2. <이하 동일>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생략>-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집합투자업자는-<이하 동일>-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하 동일>

	<p>신탁 → 자투자신탁), 통화관련 파생상품 추가</p>	<p>2~5. &lt;추가&gt;</p>	<p>2.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3.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5.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b>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b></p>	<p>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 신탁 → 자투자신탁), 통화관련 파생상품 추가</p>	<p>&lt;추가&gt;다음 각 호의-&lt;생략&gt;-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5. &lt;생략&gt;</p> <p>②~③ &lt;추가&gt;</p>	<p>①다음 각 호의-&lt;이하 동일&gt;-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5. &lt;이하 동일&gt;</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3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③제 2 항에서 “법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 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 개월</p> <p>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p> <p>3.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 2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 개월)</p>
부 칙		<추가>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5 년 0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b>요약정보</b>			
투자목적 및 전략	정의 추가	<추가>	<p>주 1)인프라스트럭처자산 ( Infrastructure assets)이란? 국가나 도시, 기타 사회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분야를 포함합니다.</p> <p>&lt;표&gt; 참조</p>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 신탁 → 자투자신탁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 신탁 → 자투자신탁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가>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신탁 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2.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업데이트	-	<p><b>2025년 03월 28일:</b></p> <p>-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p> <p>- 통화관련 파생상품 추가</p>

			<p>- 목표환헤지 비율(90% 수준 → 60% 이상)</p> <p>-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p>
<p>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가. 운용전문인력</p>	<p>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p>	-	<p>정보 업데이트</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통화관련 파생상품 추가, 오기 정정</p>	<p>가. 자집합투자기구</p> <p>1) 투자대상 &lt;투자대상 추가&gt;</p> <p>2) 투자제한</p> <p>&lt;추가&gt;</p>	<p>가. 자집합투자기구</p> <p>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 통화관련 파생상품 투자비율 : 10% 이하(위험평가액 기준)</p> <p>투자대상 내역 :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외파생상품. 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에 한합니다.</p> <p>2) 투자제한</p> <p>파생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li> </ul>

		<p>나. 모집합투자기구</p> <p>1) 투자대상</p> <p>6.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 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 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 선물, 국채선물 등 <b>법 제 9 조 제 14 항</b>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 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p>	<p>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p> <p>-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 위</p> <p>※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3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따른 투자 한도를 초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 상자산의 가격 변동</p>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 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나. 모집합투자기구</p> <p>1) 투자대상</p> <p>6.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 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 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 선물, 국채선물 등 <b>법 제 8 조의 2 제 4 항제 2 호</b>의 규정에 의한 파생 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p>
--	--	--	---

		<p>래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통화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b>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에 한한다</b></p> <p>7.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b>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 및 금리스왑거래</b>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한다)</p>	<p>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lt;삭제&gt;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lt;삭제&gt;</p> <p>7.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lt;삭제&gt;금리스왑거래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한다)</p>
<p><b>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b></p>	<p>정의 추가,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환헤지전략, 목표환헤지 비율(90% 수준 → 60% 이상)</p>	<p>가. 투자전략 <b>&lt;추가&gt;</b></p> <p>나. 위험관리 <b>환 위험관리</b> 본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p>	<p>가. 투자전략 <b>주 1)인프라스트럭처자산 ( Infrastructure assets)이란?</b> 국가나 도시, 기타 사회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분야를 포함합니다.</p> <p>&lt;표&gt; 참조 나. 위험관리 <b>환 위험관리</b> 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자산의 USD, EUR 등 일부 주요 통화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 목표헤지비율: 외화표시자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p>

			<p>자하는 해외자산)의 60% 이상</p> <p>3)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혜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및 통화선도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p> <p>※ 환혜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혜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혜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정산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환혜지 비용 : 이 투자신탁은 환혜지를 수행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혜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은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는 비용이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거래</p>
--	--	--	---

		<p>[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p> <p>가. 투자전략</p> <p>한편,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글로벌 REITs 및 부동산 개발회사 관련 유가증권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지할 예정입니다.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나. 위험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lt;환헤지관련 내용&gt; &lt;추가&gt;</p>	<p>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비용을 기재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p> <p>[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p> <p>가. 투자전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나. 위험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 모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p>
10. 가. 일반위험	환헤지 전략 운용 주체 변경(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가>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	소득세법 개정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한 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p>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lt;생략&gt;-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p> <p>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단, 양 국가 간에 이중과세조정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lt;이하 그림&gt;</p> <p>- 발생소득에 대한-&lt;생략&gt;- 처리하고 있습니다.</p>	<p>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lt;이하 동일&gt;-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p> <p>-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p> <p>- 발생소득에 대한-&lt;이하 동일&gt;- 처리하고 있습니다.</p>
------	------------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u>정보 업데이트</u>
------------------------	------------------	---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u>정보 업데이트</u>
------------------	------------------	---	----------------

<표>

디지털 인프라	운송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사회 인프라
통신 타워	공항	유틸리티	헬스 케어
데이터 저장 장치	유료도로	전통 에너지	교육
클라우드 연결	항만	청정 에너지	폐기물 관리
광섬유	물류		주택